# 한국교육개발원 우리노동조합 규약

2026. 4. 28.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한국교육개발원 우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상호 존중과 화합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체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동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공정한 보수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교육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노동환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7.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과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
8. 조합원의 의견 수렴 및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상급단체) 본 조합은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제5조(주된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한국교육개발원)에 둔다.

제6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 2 장 조 직

## 제 1 절 조합원

제7조(구성) 조합은 한국교육개발원에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는 제외하며,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책에 임명된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에 따른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 제출 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3. 규약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한 때

② 제1항 제1호의 해고는 이에 불복하여 동 사안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③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책에 임명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자 직책을 면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다만, 해당자의 직무가 계속하여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자격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은 회복되지 않는다.

⑤ 제3항에 따른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 제 2 절 권리와 의무

제10조(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3.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조합 규약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 발언 및 의결할 권리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6.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참여할 권리
7.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② 전항의 권리는 규약에 의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규정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 및 총회에서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3.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
4. 조합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5. 각종 협약과 조합이 확보한 권익을 지킬 의무
6. 조합 내 필요한 비밀을 지킬 의무

제12조(조합원 비밀보호) 조합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 3 장 기 구

제13조(기구) 조합에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연구위원회
4. 법무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징계위원회
8. 기타 특별위원회

## 제 1 절 총회

제14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하고자 할 때는 7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중 최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및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 변경 및 조직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쟁의행위결의에 관한 사항
10. 각종 정책 건의
11. 기타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임원 및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 소집 요청
3. 조합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4. 조합원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6.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항간 전용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10.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1.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3 절 연구위원회

제19조(구성) 위원장이 위촉한 연구위원장이 3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20조(기능) ① 연구위원회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노동환경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② 연구위원회는 조합의 정책 개발 및 교섭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③ 연구 결과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 제 4 절 법무위원회

제21조(구성) 위원장이 위촉한 법무위원장이 3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22조(기능) ① 법무위원회는 조합 활동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다.
② 법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약 및 규정의 해석
2.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 법령 검토
3. 조합 관련 분쟁 및 법률 대응 자문
4. 교섭 및 쟁의 관련 법률 검토
③ 법무위원회는 그 검토 결과를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 제 5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3조(구성) 위원장이 위촉한 회계감사위원장이 3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24조(소집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1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6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특정후보 선거대책업무를 맡을 경우 사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련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에만 구성하며, 선거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제26조(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 7 절 징계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징계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안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며, 해당 사건 처리 후 해산한다.

### 제 8 절 특별위원회

제28조(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며, 사업 종료 시 해산한다.

## 제 4 장 회 의

제29조(성립 및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전자적 의결) ① 조합은 총회, 선거 및 각종 의결을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의결은 규약상 출석 및 의결로 본다.
④ 전자적 의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진행) 조합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

고 시에는 제36조에 따른다.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32조(특별결의)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 제 5 장 임 원

제33조(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사무국장 1명

제34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개 조로 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 후보는 부위원장 후보와 함께 출마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회계감사의 선출과 불신임(해임)은 총회에서 하며,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⑤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을 포함한 총 재임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이후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회계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부서장의 임면권자가 된다.
   5) 조합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7) 위원장 유고 시의 직무 대행은 부위원장, 사무국장 순으로 한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각 위원장을 지휘한다.
3.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각 부서장을 지휘한다.
   2) 예산의 집행과 각종 기금 및 재산을 관리 운용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부서장의 임·면을 제청할 수 있다.

# 제 6 장 부서와 임무

제37조(부서)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설,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부 2. 연구부
3. 교육부 4. 홍보부

제38조(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 문서와 인장 관리,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
2. 연구부 :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자료 조사
3. 교육부 : 조합원 교육사업
4. 홍보부 : 기관지 제작 및 대내외홍보 업무

제39조(부서장 등의 임면) ① 각 부서에는 부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부장 외의 부원은 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 제 7 장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제40조(대표권 및 교섭권) ①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권과 교섭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표권 및 교섭권을 임원이나 교섭위원 중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교섭위원) 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제42조(단체교섭요구안 확정)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안은 조합원의 의견 수렴 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3조(협약 체결) 조합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 8 장 노동쟁의

제44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5조(노동쟁의 조정신청) 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46조(쟁의행위의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어 실행하는 쟁의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7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조합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48조(목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합은 기관의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거나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조합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49조(노사협의회 위원) 조합이 추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0조(운영)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 10 장 재 정

제51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2조(조합비 및 특별부과금) ① 조합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소송, 쟁의, 교섭, 조직 확대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특별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1항의 조합비 및 제2항의 특별부과금에 대하여 조합이 지정한 계좌이체, 자동이체, CMS 또는 그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한다.

④ 단체협약 또는 관계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비 일괄공제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무급휴직 등 임금 미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1항의 조합비 또는 제2항의 특별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임금수준,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합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설립년도의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설립년도의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4조(가예산) 당해 연도의 예산이 미성립 시 전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

제55조(예산항목 간 전용) 예산항목 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6조(결산) 회계연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57조(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58조(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은 조합비 회계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1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1 장 표창 및 규율

제59조(표창) 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60조(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위

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 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단, 감면 또는 면제된 조합원은 미납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②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1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선출방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62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다음 사항의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임원의 해임 결의
2. 조합원 징계

제63조(징계의 종류) 징계종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권리정지(최고 1년 이내)
3. 제명

제64조(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 시까지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된다.

# 제 12 장 해 산

제65조(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결의한 경우
3. 노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제66조(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